

[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 관련]

Q1 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로 추천하였으나 업체의 휴폐업으로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지역을 변경하여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?

- 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는 자격변경 후 2년간 추천지역에서 취업·거주 하여야 하며, 2년이 경과하여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·거주가 가능합니다.

Q2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으로 3년을 체류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역특화형 비자(F-2-R)를 취득할 수 있나요?

- 지역특화형 숙련인력(E-7-4R)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소득 등 요건*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(F-2-R)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* 연간소득 GNI 70%이상, 한국어능력 4급(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) 이상 등
- 또한, 인구감소관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요건*을 갖추어 거주지 변경 없이 국내 장기체류 거주(F-2-99)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* 연간소득 최저임금 1.5배(가족초청 시 GNI 1.5배 이상,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

Q3

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(F-2-R)를 취업요건으로 추천을 받은 뒤 창업도 가능한지요?

- 창업요건(투자금액 2억 이상)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을 받아 창업도 병행이 가능합니다.

Q4

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(F-2-R) 비자를 발급받아 5년이 경과하면 영주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요?

- 5년을 거주했다는 조건만으로 영주자격이 부여되는 아니며, 영주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5

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(F-2-R)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 요건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, 출국하여야 하는지요?

-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하며, 다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 체류가 불가하므로 출국하여야 합니다.

Q6

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(F-2-R) 가족초청의 소득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가족구성원 4명 이하는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으로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,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월소득요건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.

가족구성원 (본인포함)	5인	6인	7인	8인
금액(원/월)	3,411,932	3,871,106	4,314,445	4,757,784

Q7

시범사업, 2024년 체류자격변경된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(F-2-R)도 업종 제한이 없어나요?

-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 소지자도 취업 업종 제한이 없어집니다.

[지역특화 숙련인력(E-7-4R) 관련]

Q8

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(E-7-4R)과 기존 K-point E-7-4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은 기존 K-point E-7-4 체계에 편입하되 보다 용이하게 E-7비자로 전환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예) (K-point E-7-4) 국내 체류 4년 이상, 가족 초청 시 자산 2천만원 이상 보유, 배우자 취업 제한 ⇨ (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 E-7-4R) 국내 체류 2년 이상, 가족초청 4인까지 소득요건 미적용, 배우자 취업 허용 등

-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인구 유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예) 현 근무처 근로기간 : (인구감소관심지역) 1년 이상 ⇨ (인구감소지역) 제한 없음

Q9

비전문취업(E-9) 자격으로 지금 근무처가 없이 구직상태입니다. 체류기간은 2년이 지났는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비자를 취득할 수 있나요?

- 지역특화 숙련인력(E-7-4R)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하며,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처의 고용주 추천이 필요합니다.

- 다만, 인구감소지역은 근무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 중(고용센터에서 부여한 구직유효기간 내)이거나,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(E-7-4)인 구직(D-10)인 경우라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예정 근무처 고용주의 추천이 필요합니다.

Q10
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요건 차등화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인가요?

-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은 향후 사업 시행 결과 분석,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.

Q11

K-POINT E-7-4 는 한국어 능력 제출기한을 유예해준다고 하는데,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비자도 한국어 능력 제출기한이 유예되나요?

-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자격도 K-POINT E-7-4와 동일하게 한국어 능력 제출 기한 유예가 가능합니다. 다만, 동반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 - 기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가족초청불가 및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.

Q12
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도 가족초청 시 소득요건이 필요한가요?

- 가족구성원 4명 이하는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으로 가족초청이 가능하지만,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월소득요건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.

가족구성원 (본인포함)	5인	6인	7인	8인
금액(원/월)	3,411,932	3,871,106	4,314,445	4,757,784

Q13
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취업이 가능한가요?

-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 자격 소지자가 한국어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거주지 내 (추천 지자체)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.

Q14

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의 업체별 고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?

- 지역특화형비자 업체별 고용인원은 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,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인원을 말합니다.

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	최대 고용 가능인원(F-2-R, E-7-4R)
1명~5명 이하	3명
6명 이상 50명 이하	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%
51명 이상 100명 이하	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% 내 최대 35명
101명 이상 150명 이하	40명
151명 이상	50명

- 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허용 인원은 각각 계산하며, 기존 숙련기능인력(E-7-4)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됩니다.

Q15

F-2-R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이미 최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. 추가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나요?

- 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고용 인원은 별도로 산정하므로 각각 고용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.
- 그러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고용가능 인원 산정 시 기존 숙련기능인력(E-7-4) 인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
Q16

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를 고용인원 산정 시 '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'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규 창업한 경우 고용이 가능한가요?

-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의 취지와 인구감소지역임을 고려하여 신규 창업한 업체에 한하여 내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더라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.

Q17

현재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E-9, E-10, H-2가 고용업체를 인구감소(관심)지역으로 변경하여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은 현재 인구감소(관심)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E-9, E-10, H-2가 보다 용이하게 E-7비자로 전환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.
- 다만, 인구감소지역은 근무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 중(고용센터에서 부여한 구직유효기간 내)이거나,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(E-7-4)인 구직(D-10)인 경우라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(E-7-4R)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